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10. 8 선고 2022가단2028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중양회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정차범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소외 D과,

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2. 3. 17.경 체결된,

나.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2. 3. 15.경 체결된,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진도군 어선원부 2022. 3. 17.자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진도군 어선원부 2022. 3. 15.자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 채권자인 F은행으로부터 2019. 3. 13. 1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변제기한인 2022.

3. 13.을 도과하여 이행지체에 상태에 빠졌다.

나.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의사로 2022. 3. 17. 별지1 목록 기재 어선(이하 'G'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22. 3. 15. 별지2 목록 기재 어선(이하 'H'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22. 6. 29. 소외 E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의 F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E에 대한 그 대위변제금 합계 119,883,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원 채권자인 F은행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자로서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의사로 G 및 H(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E에게 해당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으로부터 각 해당 선박을 매수할 당시 E의 채무초과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9 내지 13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록 마친 이후로도 일정 기간 E이 이 사건 각 선박을 활용하여 홍보 및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10 내지 13), ② E이 사건 각 선박의 운영을 중단한 이후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을 정박해 두었을 뿐인 점, ③ 피고들이 뚜렷한 활용 계획도 없이 급박하게 고가인 이 사건 각 선박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선박 매입 전부터 E을 잘 알고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지급한 매매대금이나 피고 B이 근저당권을 승계한 사정, 어선운행을 위한 교육 이수)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성

별지